

과과정 및 징수과정, 그리고 체납자관리 과정의 업무를 컴퓨터시스템을 활용하여 처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전산화에 대한 환경적 측면에서의 요구는 지방세업무처리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에 대응하기 위하여 시행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 가. 부과조정단계의 문제점

지방자치단체의 세목 중 재산세적 성격을 가진 것은 장표류에 의하여 관리되고 있다. 따라서 지방세부과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필요한 부분을 찾기 위하여 많은 자료를 뒤적여야 한다. 이때 시간 손실비용이 발생하고, 많은 인원이 필요하므로 예산상의 비용낭비현상을 발생시킨다.

예를 들어서 토지관련세목은 취득세, 등록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건물관련세목은 재산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취득세, 등록세, 그리고 행정명자료와 연계된 것은 자동차세, 주민세(균등할)가 있으며, 면허와 관련된 세목은 면허세이다. 국세와 관련된 지방세목(소득세, 법인세)으로는 주민세(법인 및 개인사업자 소득할, 법인균등할)가 있다. 원천징수하는 것은 마권세, 담배소비세, 도축세, 주민세(소득할)가 있다(<그림 1>

참조). 이처럼 동일한 자료를 이용하는 세목이 많이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기관에 의하여 각기 다른 장부에 의하여 관리되고 있으므로 많은 비용과 시간적 손실이 초래되고 있다. 따라서 부과단계에서 이러한 자료를 DB화시킴으로서 공동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 나. 징수 및 체납자관리의 문제점

이 단계에서의 문제점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 인력 및 예산의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 납세자가 납부한 세액영수증을 수납대행기관과 시금고은행에서 직원이 분류하여야 하며, 다시 시청에서는 세목별, 개인별 납부세액을 일일이 수납부와 영수증을 대조, 확인하여 소인하여야 한다. 더욱이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등 정기본 세목의 납부는 자연히 납기마감일에 집중되므로 소인 대상건수가 폭주하여 본래의 징수업무에 전념하기 곤란하다.

둘째, 부정확한 업무처리로 민원발생 및 세액탈루의 소지가 있다. 담당공무원의 소인착오 또는 체납부 작성시 오류발생으로 이미 세금을 납부한 납세자에게 독촉장이 발부되는 경우가 있어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